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88
----------	-----

2017.04.28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엄재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7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4월 19일

(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임희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·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도유품종보호권을 유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입

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(안 제1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- 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도내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·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과 제2항 중 “100분의 30” 을 각각 “100분의 50” 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처분보상금) 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액의 <u>100분의 30</u>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②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<u>100분의 30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	제15조(처분보상금) 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액의 <u>100분의 50</u>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②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<u>100분의 50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(특허청)

제16조(등록보상금)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7조(처분보상금)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가. 명 칭 :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보상

나. 주요사업 : 직무육성품종개발자에게 보상금 지급

다. 추진근거 :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직무육성품종개발자에게 보상금 지급

3. 관련조문

○ 제15조(처분보상금) 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

○ 직무육성품종개발자에게 보상금(처분보상금)을 상향 지원

나. 추계의 전제

○ 2016년까지의 지원 현황을 감안하여 비용추계

다. 추 계 결 과 : '1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천만원 정도 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‘17년)	2차년도 (‘18년)	3차년도 (‘19년)	4차년도 (‘20년)	5차년도 (‘21년)	계
세 입	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국 비 도 비 기타(사업수입)	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세 출	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사 업 비	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재원 조달	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지방세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							
구.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

※ 처분보상금 : ‘11년도 4종 2,000천원 , ‘12년도 7건 2,959천원 , ‘13년도 9건 8,112천원 , ‘14년도 9건 3,998천원 , ‘15년도 11건 4,852천원 , ‘16년도 4,201천원

5. 작성자 :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홍성택(☎ 220-5540)